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탐정업의 지도·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39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및 구성	7
2. 탐정업 제도화 논의 경과	10
3.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10
가.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필요성	14
나. 자격제도 도입의 적정성 및 실효성	16
4. 조문별 검토	16
가. 등록 및 지도·감독	16
나. 탐정업무의 범위	19
다. 결격사유	26
라. 탐정 자격시험 등	30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12. 0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함(안 제2조제4호).

라.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사람은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업·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차.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구성

제정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통해 실종자 조사,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분석 등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탐정업’으로 제도화하고, 국가자격(공인탐정)과 등록·감독 체계를 통해 관리하려는 것임.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분실·도난 재산 회수, 민·형사 사건의 소송 준비자료 수집 등 사실조사 수요는 지속되어 온 측면이 있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8월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탐정’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가 설립되었고, 일부 단체에서는 탐정관련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발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검증 탐정사무소 개소, 관련단체 난립 및 탐정 자격증 남발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는 관계로 기존 심부름센터나 홍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제정안은 이러한 국민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현재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에 대한 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판단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에 등록하고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② 탐정업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탐정업무의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조사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며, ③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설정과 자격시험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④ 공인탐정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⑤ 법인, 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⑥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명을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

구 분	내 용
제 명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정의(제2조) 업무(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제2장 공인탐정	결격사유(제5조), 공인탐정 자격시험 등(제6조) 시험의 일부면제(제7조)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제8조) 자격증 등의 양도·대여 금지 등(제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0조)

구 분	내 용
제3장 공인탐정의 등록	공인탐정의 등록 등(제11조) 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제12조)
제4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제13조) 사건부의 작성·보관(제14조) 의뢰인의 신분 확인(제15조) 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제16조) 수집·조사의 제한(제17조)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제18조) 업무의 수행원칙 등(제19조) 의뢰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20조) 사무원(제21조) 손해배상책임(제22조), 검직신고(제23조) 등록증 등의 제시(제24조) 비밀의 준수 등(제25조) 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제26조)
제5장 공인탐정법인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제27조) 설립절차(제28조) 구성원 등(제29조) 정관기재사항(제30조) 법인 명칭 등(제31조) 설립등기(제32조), 분사무소(제33조) 업무집행방법(제34조) 설립인가의 취소(제35조), 해산(제36조), 합병(제37조), 준용규정(제38조)
제6장 공인탐정협회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제39조), 공제사업(제40조)
제7장 지도·감독	지도·감독 등(제41조), 자격취소 등(제42조), 등록취소 등(제43조), 청문(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45조)
제8장 벌칙	벌칙(제46조), 양벌규정(제47조), 과태료(제48조)
부칙	시행일

2. 탐정업 제도화 논의 경과

탐정업 제도화 관련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부터 제출되어 왔으며, 독립 법률 제정 또는 경비업법 개정 형태로 추진된 바 있음.

역대 법안의 주요 쟁점은 탐정업 관리·감독 권한을 경찰청과 법무부 중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지에 있었고, 그 밖의 제도 설계는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여 왔음.

제18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이 소관위를 통과한 사례가 있으나, 이후 법사위 단계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제도화가 지연되어 온 측면이 있음.

< 역대 국회 탐정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구분	법률안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법률안상 소관기관
17대	민간조사업법안 (이상배의원 대표발의, 2005.9.)	행정자치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7대	민간조사업법안 (최재천의원 대표발의, 2006.4.)	소관위 미지정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18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008.9.)	행정안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중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8대	민간조사업법안 (강성천의원대표발의, 2009.4.)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19대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2.11.)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19대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의원 대표발의, 2013.3.)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법무부

구분	법률안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법률안상 소관기관
19대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5.11.)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20대	공인탐정법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16.9.)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상정 후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20대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대표발의, 2017.7.)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21대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20.11.)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21대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2020.11.)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 폐기	경찰청

제도화가 지연된 배경으로는 ① 관계부처 간 관할 이견, ② 관련 단체(직역)와의 이해관계 충돌, ③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과거 탐정업의 제도화와 관련한 찬반양론의 주요 논거를 정리하면,

찬성 측은 ① 현대사회의 복잡성·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② 사실 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 서비스가 이루어져 왔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도 규제할 수도 없어 실제로는 합법적인 대행

업무 외에 불법행위도 자행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③ 영세업체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난립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이 오히려 의뢰 시 제공했던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서 국가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 및 영업등록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반대 측은 ① 빈부의 격차에 의한 탐정 활용 기회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②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들에 의한 합법을 가장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행태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고, 경미한 범죄에서부터 기업 범죄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죄들이 민간영역에서 조사되고 타협되는 등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감소하게 되어 사법정의가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③경찰 등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이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새로운 직업이 생기게 된다면 기존 직업에 대한 침해로서 직업간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3. 입법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

가.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필요성

탐정업이란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 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조사를 대행하는 업체들이 자유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제4호 등 위헌확인에 관한 선고(2016헌마473)에서 ‘신용정보법이 금하고 있는 탐정업무는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사생활조사업)이며, 탐정업 업무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금지되지 않은 탐정업무는 가능하다’고 판시하였고, 2020년 2월에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금지사항(제40조)의 적용 대상을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개정 前	개정 後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u>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u>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u>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u>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 3. (생략)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u>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u> 6. ~ 7. (생략)	1. ~ 3. <삭제>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u>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u> 6. ~ 7. <삭제>

참고로, 탐정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를 위한 업종분류상으로는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분류코드: 930916) ‘심부름 용역원’(분류코드: 940917)으로 분류하고 있으며,¹⁾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업체 수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며,²⁾ 탐정업과 관련한 여러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있고, 일부 단체에서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제도를 활용하여 각종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³⁾하고 있는 상황임.

1)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상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개인 및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며, 홍신소·사설탐정 서비스, 필체감정·지문조사 서비스 또는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등이 예시되어 있음.

2) 2022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겸업탐정 등을 포함하여 탐정업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돈만 주면 '뚝딱' 자격증 남발.. 갈길 먼 탐정업", 2022.8.14.)

3) 주요 탐정 사설자격증 발급 단체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및 '기타 전문 서비스업' 현황 >

구 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299개	360명	75330
기타 전문 서비스업	979개	23,289명	71600

※ 자료: 「서비스업 조사」 2023, 국가데이터처

< 탐정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자격 발급기관 현황 >

구 분	기관 수	비고
비영리법인	1개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14년~)
민간자격 발급기관*	102개	탐정·민간조사 관련 민간자격 발급

※ 자료: 「민간자격 등록현황」 '25. 12. 1. 기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와 같이 관련 단체가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고,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관계로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하여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탐정업은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단 체 명	자 격 증	비 고
한국탐정협회	PIA민간조사(탐정)	worldspia.com
한국민간조사협회	FPI(민간조사원) 자격증	pikorea.org
대한민간조사협회	PIA민간조사(탐정)	kspia.or.kr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법적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부처간 이견,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이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⁴⁾,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⁵⁾

4)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고(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판결 등)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 즉 사실조사행위 또는 자료수집행위도 포함됨(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 사건이나 심판 사건,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본 법률안과 충돌하게 된다고 할 것임.

5) 대한변호사협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157호) 및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윤재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76호)에 대한 검토의견(2021.01.19. 제출)을 공식 제출하였으며, 본 제정안에 대해서도 동일 취지의 반대 의견을 제출함

나. 자격제도 도입의 적정성 및 실효성

탐정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⁶⁾하고 있어, 탐정 업무가 현행법의 제약 내에서만 가능함을 명시하면서 공인 탐정 자격을 받지 않고 탐정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처벌⁷⁾하도록 하여, 여타 자격 제도와 같이 탐정업은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에게만 '허가'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이 이러한 합법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탐정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사실조사 활동 등은 탐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며,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헌법 재판소 결정(2016헌마473) 이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탐정사무소를 개설하여 자유업으로서 이미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6) 제정안은 제3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

7) [제정안]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①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공인탐정의 업무를 한 자

사후에 이를 행정청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른 한편으로, 제정안이 도입하고 있는 탐정 활동에 관한 자격제도가 일반에서의 적법한 사실조사·정보수집 행위를 금지하거나 공인탐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를 법률상 전문자격인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탐정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통한 불법행위 최소화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과 함께 기존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측면에 대해서도 두루 검토하여 이익을 형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조문별 검토

가. 등록 및 지도·감독

제정안
제11조(공인탐정의 등록 등) ①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지도·감독 등) ① 경찰청장은 탐정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인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정안은 공인탐정이 탐정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고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탐정업을 자유업에서 관할관청의 등록 및 지도·감독 대상 영업으로 변경하고, 그 관할관청을 경찰청으로 한다는 두 가지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음.

먼저, 탐정업을 자유업에서 등록 대상 영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을 수행하는 탐정업의 성격상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주요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기관 등이 탐정업을 관리·감독하고, 프랑스는 2003년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인가제도와 자격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6년까지 자유업이었으나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신고제로 전환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公安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다음으로, 제정안은 등록 및 감독관청을 경찰청으로 규정하고 있음. 탐정업 양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실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체계, 유사 직역에 대한 관리 경험, 선진외국 사례 등을 종합하여 소관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전국적인 조직·인력과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 등 유사한 분야에 대한 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탐정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법무부는, 탐정업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아 인권 옹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이 소관 기관이 될 경우 전·현직 경찰 간에 유착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State)나 지방(Local) 정부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주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 주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되나, 주 법무부(Attorney General's Office)에서 담당하는 경우는 Kansas주 한곳에 불과한 데 비해, 주 경찰이 담당하는 경우는 Connecticut, Delaware, Maryland 등 9개 주에 달하고 있음. 그 외 영국은 내무부

소속 보안산업위원회(SIA), 프랑스는 경시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서, 스페인은 경찰청, 일본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편 제정안은 탐정업 등록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탐정업 특성상 휴업·폐업 후에도 명칭만 유지되는 사무소, 부실·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탐정업 등록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갱신 요건으로 보수 교육 이수 등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여지가 있음.

나. 탐정업무의 범위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정”이란 사람의 생사나 그 소재, 도난 자산 등 물건의 소재, 또는 권리·의무의 기초가 되는 관련 정보와 사실관계의 존부 등을 확인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련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 이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탐정업”이란 탐정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인탐정”이란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4.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탐정과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공인탐정법인을 말한다. 제3조(업무) ① 탐정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도피한 불법행위자 등 소재 불명인에 대한 소재 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2. 도난, 분실, 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② 탐정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집·조사의 제한) 공인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3. 그 밖에 의뢰범위를 벗어난 타인의 사생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제3조에서 공인탐정의 업무로 ① 미아, 가출인 등 소재 불명인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된 사실조사, ②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③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가출인, 실종자 등 소재 불명인에 대한 소재파악’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가출 또는 실종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대상자가 의뢰인의 폭행·학대 등을 피해 잠적한 경우가 다수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업무 의뢰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소재파악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상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제정안은 제19조제3항⁸⁾에서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본인 동의를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장애인 등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성인이 있을 수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폭행 및 학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방안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2호의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추적 및 소재확인’, 제3호의 의뢰인의

8) [제정안 제19조제3항]

제19조(업무의 수행원칙 등) ③ 공인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또는 실종자가 성인인 경우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은 가출인 또는 실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9) 예를 들어, 소재 불명인 소재파악 의뢰는 경찰에 기 신고·접수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의 지시사항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협업하도록 하며, 소재가 확인된 경우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전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탐정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의 사정에 따라 그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주법(州法) 등에서 업무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업무를 할 수 있고, 프랑스는 국내 치안에 관한 법률에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당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적 조사활동”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탐정업 업무범위 관련 주요국 입법례>

구 분	법률 조문상 활동범위
미 국 (플로리다 州)	< Florida Statutes Chapter 493.6101 >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조사하는 활동 a.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범죄나 위법행위 그리고 미국 내 주나 지역에 대한 위협행위 조사 b.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신원확인, 습관, 행동, 동기, 소재확인, 친자확인, 친밀도, 거래, 명성, 성격 등의 파악 c. 목격자나 기타 사람들의 신빙성 확인 d. 실종자 혹은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 상속자에 대한 소재 파악 e. 분실이나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를 확인해 주거나 찾아주는 활동 f. 화재, 명예훼손, 모욕,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파악

구 분	법률 조문상 활동범위
프랑스	< Code de la sécurité intérieure Article L621-1 >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당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적 조사활동
일 본	<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당해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들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실지의 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당해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
스페인	< de Seguridad Privada > a) 사적 행동과 사실에 관한 정보와 증거의 획득과 제공 b) 형사절차에서 적법한 자의 요청에 따른 추적가능한 범죄의 조사 c) 축제, 숙박시설, 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의 감시

※ 자료: 경찰청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제정안에 따른 탐정업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나, 그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탐정의 조사활동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탐정업 관련 직역>

구 분	업무범위
변호사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 위임 또는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

구 분	업무범위
	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 알선 금지
법무사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제188조)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신용조사 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행사하는 행위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함) ▶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제40조제4항) ①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동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원 ·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구 분	업무범위
변리사 (변리사법 제2조)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참고로 탐정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사회안전 분야, ② 보험 분야, ③ 기업보안 분야, ④ 법률 분야, ⑤ 사이버 분야, ⑥ 기타 분야, 이상 6개 분야에 걸쳐 37개의 세부업무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공인탐정의 업무범위 관련 주요 검토대상 업무>

사회안전 분야
① 신변위협 등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 보호 필요성 확인 조사 ② 저명인사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예방 조사 ③ 스토크,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조사 ④ 성인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조사 ⑤ 도청기, 몰카 등 사생활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⑥ 피해 사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⑦ 지역에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범죄의 재발생 가능성 등 조사 ⑧ 기타 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항 조사 등
보험분야
① 산재 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 ② 손해사정사의 업무 외 보험사고 및 차량사고 등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③ 기타 피해 사실 조사 및 보험금 지급 타당성 조사 등
기업보안 분야
① 회사 내 공금 횡령 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사 ② 기업 거래에 있어서 사기 예방을 위한 조사 ③ 기업 관련 각종 영업권 침해 사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 불법 위조 상품·밀수품 역추적, 생산에서 출하까지의 유통경로 파악 등 - 업무기밀 유출, 저작권·특허권 침해여부 등

- ④ 기업 기밀 유출을 위한 불법 스카우트 여부 조사
- ⑤ 인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취업희망자에 대한 행동조사
- ⑥ 회사의 직원, 계약업체, 하청업체의 진실성, 효율성 조사
- ⑦ 피고용인의 허위 병가, 위장 상해 등 신뢰 위반 행위 조사 등

법률 분야

- ①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증인·목격자 소재 확인 및 증거·정보 수집
- ② 범죄수사, 심판위원회, 중재, 민사·형사재판에 사용될 증거 확보
- ③ 친고죄에 관한 사건 조사(비친고죄의 경우 발견시 수사기관에 신고)
- ④ 이혼소송에 따른 법정 증거자료 수집
- ⑤ 자녀 양육권 등 가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무 위반 행위 조사
- ⑥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대방의 소재 등 확인 조사
- ⑦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
- ⑧ 결혼·재혼시 사기 예방을 위한 배우자의 행적조사 등

사이버 분야

- ① 온라인상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② 특허·실용신안 침해, 디자인 불법 복제품·위조 상품 등의 온라인 유통조사
- ③ 명예훼손 등 온라인상 불법행위 감시

기타 분야

- ① 실종자나 주인·상속인 없는 재산의 소유자, 부동산 상속자 소재파악
- ② 개인의 지불능력 등 신용 및 평판 조사
- ③ 각종 사건·사고, 손실, 피해,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조사
- ④ 해외도피사범 및 도피재산의 소재에 대한 사실 조사
- ⑤ 가출청소년, 자녀의 이성관계, 가족문제 등 가정 내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조사
- ⑥ 민·형사 사건 외에 공인된 징계 또는 포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
- ⑦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의 부당 사용행위 조사
- ⑧ 개인, 회사 또는 기관과 다른 사회 조직과의 관계 확인 조사 등

※ 자료: 경찰청

다. 결격사유

제정안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탐정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정안은 탐정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범죄경력자로서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인탐정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탐정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개별법상 직무수행능력은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피한정후견인을 획일적으로 특정 직역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피후

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는 문제가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음.¹⁰⁾

또한, 제정안 제7조는 경찰청·검찰청 등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 시험 일부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법무사·공인회계사 등 사례에 준하여 ‘공무원으로서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무사·공인회계사 결격사유>

구 분	결격사유
법무사 (법무사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

10) 2020년 8월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심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되 특수경비원·화재위험평가 대행자 등 일부 직역에는 공공안전·복리를 고려하여 대체 결격사유(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2020. 12.)된 바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도 2021년 개정으로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도록 정비되었고,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서도 이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관련 결격조항 삭제를 권고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음.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비 법률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 2202916호, 2024. 8. 16.), 정부 차원에서도 결격조항의 광범위한 정비와 함께 개별 법령의 자격·인허가 요건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검증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이 제시된 바 있음.

구 분	결격사유
	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따라 제명(除名)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울러 제정안은 범죄경력자인 경우에도 형벌의 집행·면제 또는 유예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공인탐정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경력 관련 결격기간의 적정성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사생활 침해와 밀접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일부 국가의 경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한 경과와 관계없이 탐정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결격사유 관련 주요국 탐정 면허제도>

국 가	면허제도	주 요 내 용
미 국	있음	· 주 마다 상이하나 미국 시민권 소지자로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사경력,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 등 일정 자격을 요구함
스페인	있음	· 스페인 국적을 보유하고 18세 이상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최근 2년 내 공직에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제한
프랑스	있음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외국인도 면허취득이 가능하나 자국에서 활동할 경우 프랑스 면허취득자의 도움을 받아야 함
독 일	있음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법인에서 이론, 실무, 법률, 법과학 등을 6개월 이상 교육받은 후 법인에서 발급한 면허를 받아 활동하고 취득된 면허는 국가에서 공인하며 면허취득자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됨
호 주	있음	· 전과기록이 없어야 하고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일정 수준이 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함
일 본	없음	· 탐정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탐정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폭력 단원 등 전과자의 탐정업계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음

※ 자료: 경찰청

한편, 공인탐정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미국, 스페인 등의 경우에는 국적보유를 탐정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규정들을 것인지에 관한 입법정책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탐정 자격시험 등

제정안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① 공인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공인탐정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③ 공인탐정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2차 시험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성·적성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시험시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① 공인탐정 자격시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인탐정 자격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인탐정 자격시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탐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공인탐정이 되려면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공인탐정 자격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자격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찰청은 탐정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시험제도 등을 통해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찰청장이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입장임.

다만 경찰청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여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다수이고,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제도를 활용하여 탐정관련 민간자격증도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제정안은 경찰청 산하에 ‘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경찰청과 법무부 간 관할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된 사정을 고려하여, 관리·감독은 경찰청이 담당하되 자격시험 운영에서는 법무부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갈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부처 간 이견 해소 및 입법 지연 방지 측면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성격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관련 위원회와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별도 위원회 설치 없이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경찰청 산하 위원회와의 연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임. 반면 경찰청은 탐정업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므로 독자적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며, 동 위원회는 경찰사무가 아닌 공인탐정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 등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참고로, 탐정업은 경찰청·법무부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생활 침해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보호), 행정안전부(행정사법과의 관계 조정) 등과도 관련될 소지가 있고, 탐정업계·소비자단체·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 외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경찰청·해양경찰청·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가정보원·군수사기관 직원 등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인탐정 제도 도입 시 해당 분야 실무 경험을 보유한 퇴직자들이 공인탐정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법무사·세무사·관세사·경비지도사 등에서도 일정 경력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사례가 운영되고 있어, 제도 형식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가자격시험 응시요건 비교>

직 종	근거법률	제1차 시험 면제요건
법 무 사	법무사법 (제5조의2 ¹¹⁾)	법원·헌재·검찰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세 무 사	세무사법 (제5조의2 ¹²⁾)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
관 세 사	관세사법 (제6조의2 ¹³⁾)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시행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¹⁴⁾)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등

11) 「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2)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13) 「관세사법」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①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차시험의 전과목 면제

14)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탐정업법 제정의 목적이 경찰관 등 관계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안이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의 탐정업무 수행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¹⁵⁾함으로써(안 제46조제3항제1호) 현재 자유업 형태로 탐정업을 영위하던 기존 종사자의 진입은 제한하는 반면, 경찰·검찰·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제도 설계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수사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간조사 영역에서 요구되는 조사기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직업윤리 등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며, 공권력에 기반한 수사활동과 민간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사실조사 활동은 권한과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전직 수사·정보기관 공무원에 대한 1차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15) 제정안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공인탐정의 업무를 한 자

시험면제 제도 도입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제도의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면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시험면제 대신 일정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4

[참고자료] 1. 해외 입법례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관련 법규	▶ 「영업법」상 감독업종으로 규정	▶ 「사적보안활동법」	▶ 州별로 규제 다름	▶ 「민간경비업법」	▶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민간경비와 별개로 규율
자격 요건	▶ 특별한 규율 없음 ▶ 영업등록 요 ▶ 일정기간 유죄 판결 전력 無	▶ 유럽 국적 ▶ 전과기록 無 ▶ 국외퇴거·입국 금지 대상X ▶ 민간경비업 수행X ▶ 국참사원령 규정 전문자격 취득	▶ 州별로 다름 ▶ 면허 요하는 경우 -대체로 18세 또는 21세 이상 -중죄 경력 없어야 -관련분야 학력·경력	▶ SIA 면허 요 ▶ 18세 이상 ▶ 소정 교육 수료 ▶ 범죄기록 無	▶ 지역공안위원회에 신고 ▶ 결격사유 없어야
업무 범위	▶ 「자산 상황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홍산소, 탐정업)」 ▶ 허용 여부나 한계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율 無	▶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당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 개인·기업 신용조사, 보험사기 관련 조사, 채무자의 소재확인 및 사원들의 활동, 비밀누설, 금품수수 등에 관한 조사 등	▶ 예시적 열거가 많음 ▶ (전문조사원)컴퓨터분석조사원, 법률조사원, 기업조사원, 금융조사원 등	▶ 특정인에 대한 정보, 특정인의 활동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 멸살·훼손된 재산에 대한 상황과 그 원인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위한 감시, 조회, 조사	▶ 「타인의 의뢰를 받아 특정인의 소재 또는 행동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의뢰에 관계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잠복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해당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업무」
관리 감독	▶ 「영업법」에 따라 지방감독청이 규제 가능하나 예가 없음	▶ 자격제도는 내무부, 교육 내용은 문부성 관할 ▶ 경찰청장/지방	▶ 위원회 또는 경찰 내부 부서 ▶ 자격요건심사 ▶ 위법행위감시 및 자격박탈,	▶ 민간경비감독위원회(SIA) -내무부 산하 독립기구 -인가·승인, 산	▶ 영업소 소재지 관할 공안위원회 -시민인으로 구성된 총리산하 경찰의 감독기구

		행정기관이 영 업소 허가 및 취소 ▶등록부 등 자료 확인, 정보·증명 제출요구 등	갱신제한 ▶시험과 교육과 정 관리	업규정 조사, 사업자감시, 감찰, 기준 설 정 등	-보고·자료 요구 -필요한 조치 지 시 및 위반시 영 업정지명령
--	--	---	--------------------------------------	--	---

2. 공인탐정(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찬반론

찬성론	반대론
<법률서비스 확대 및 정보접근권 관련>	
▶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 공인탐정 제도 도입만으로 법률서비스의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
▶ 의료분쟁, 보험범죄, 자체 조사활동을 통한 기업손실 예방 등 전문영역 수요 있음	▶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 공백지대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법률 없이도 활동 가능
	▶ 일반인이 정보 수집·획득에 애로가 있다면 정보공개법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해결 필요 ▶ 특별한 직역을 창설해서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란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	
▶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 억제 필요 -도청·도촬 등 사생활정보 불법 수집, 휴대폰 비밀번호, 통화 내용 지득, 주민등록 등본 등 유출 행위 등	▶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공인탐정이 이러한 행위를 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 아님
▶ 해당 기관을 국가가 관리하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	▶ 위법행위는 법적 제재를 가하면 족하고, 위법사항이 많다고 하여 입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역전된 논리
	▶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조차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인에 불과한 공인탐정에게 광범한 정보접근권을 허용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 수사기관도 임의로 할 수 없는 조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 편법적인 심부름센터 운영방식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건이 존재하는 한 제도의 도입만으로 당연히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고, 그 해결책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완비에서 찾아야 함

<해외 입법례>	
▶ OECD회원국 등 세계적 추세	▶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새로운 법률 없이도 조사업 영위 가능(예 : 독일 등)
<공권력 및 다른 직역과 갈등>	
	▶ 준사법적 권한을 공인탐정(민간조사원)에 부여하면 국가의 수사권체계를 변경하게 되고 국가 수사권과 충돌 우려
	▶ 범죄 및 위법행위와 관련된 조사,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재 확인,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 확보까지 공인탐정(민간조사원)이 행한다면 변호사제도와 직역충돌
<일반 국민의 직업의 자유 침해 우려>	
	▶ 현재에도 일반 국민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조사업을 영위 가능 ▶ 공인탐정 자격을 신설할 경우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
	▶ 퇴직공무원의 생계수단 마련으로 전락할 가능성